

품목분류 개정표(2023ver.)

개정년월 : 2023. 7.

1.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p	\품목번호에 따른 세율의 결정\ 호의 용어(상품명) 진공청소기 전화기(휴대전화기, 무선전화기) 대상물품  품목번호와 관세율 제8508.11호 (기본세율 8%) 제8517.12호 (WTO협정세율 0%)	\품목번호에 따른 세율의 결정\ 호의 용어(상품명) 진공청소기 스마트폰 대상물품  품목번호와 관세율 제8508.11호 (기본세율 8%) 제8517.13호 (WTO협정세율 0%)	개정반영
16p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7.1.1.] [관세청고시 제2016-65호, 2016.12.30., 전부개정] - 중 략 -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20.] [관세청고시 제2023-6호, 2023.1.20., 전부개정] - 중 략 -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반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0p	구 분	규 정	구 분	규 정
	제17류	1. 제1701호에서 당(糖)의 편광도수 시험방법은 국제설탕분석통일위원회(ICUMSA)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17류	1. 제1701호에서 당(糖)의 편광도수 시험방법은 국제설탕분석통일위원회(ICUMSA)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20류	1.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제20류	1.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제37류	1. 영화필름 중 네거티브에는 마스터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3. "합작영화"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제44류	1.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아까주다푸리케·아프로모지아·아코·아란·안드로바·아닌그레·아보디레·아조베·발라우·발사·보세크레어·(중략)·티크·티아마·토라·비롤라·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엘로메란티
	제44류	1.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아까주다푸리케·아프로모지아·아코·아란·안드로바·아닌그레·아보디레·아조베·발라우·발사·보세크레어·(중략)·티크·티아마·토라·비롤라·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엘로메란티	제90류	1. 소호 제9006.51호·제9006.52호·제9006.53호·제9006.59호에서 "특수용도 사진기"란 현미경용·반도체소자 촬영용과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사진기를 말한다.
	제90류	1. 소호 제9006.51호·제9006.52호·제9006.53호·제9006.59호에서 "특수용도 사진기"란 현미경용·반도체소자 촬영용과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사진기를 말한다.	제91류	1. 소호 제9102.11호·제9102.21호·제9102.29호·제9111.90호·제9113.10호에서 "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이란 이 류의 주 제2호 본문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등을 위의 재료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
	제91류	1. 소호 제9102.11호·제9102.21호·제9102.29호·제9111.90호·제9113.10호에서 "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이란 이 류의 주 제2호 본문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등을 위의 재료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의 주 제2호 단서의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시계"는 소호 제9102.11호·제9102.21호·제9102.29호 중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이 류의 주 제2호 단서의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시계"는 소호 제9102.11호·제9102.21호·제9102.29호 중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7류
삭제
(개정반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1~ 22p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시행 2017.1.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 2016.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명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은 별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생략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시행 2022.1.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 202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명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은 별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생략	개정반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5p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반영												
26p	3. 신청 및 처리절차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및 처리절차\ <table border="1"> <tr> <td>유효기간</td> <td>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td> </tr> <tr> <td>통지방법</td> <td>인터넷 전자메일, 우편, FAX로 통지</td> </tr> <tr> <td>신청제한 및 반려대상</td> <td>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수입 시마다 성분 조성이 다른 경우)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4.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물품분석에 필요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물품분석에 필요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td> </tr> </table>	유효기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통지방법	인터넷 전자메일, 우편, FAX로 통지	신청제한 및 반려대상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수입 시마다 성분 조성이 다른 경우)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4.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물품분석에 필요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물품분석에 필요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3. 신청 및 처리절차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및 처리절차\ <table border="1"> <tr> <td>유효기간</td> <td>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td> </tr> <tr> <td>통지방법</td> <td>인터넷 전자메일, 우편, FAX로 통지</td> </tr> <tr> <td>신청제한 및 반려대상</td> <td>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수입 시마다 성분 조성이 다른 경우)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4.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물품분석에 필요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물품분석에 필요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td> </tr> </table>	유효기간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통지방법	인터넷 전자메일, 우편, FAX로 통지	신청제한 및 반려대상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수입 시마다 성분 조성이 다른 경우)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4.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물품분석에 필요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물품분석에 필요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반영
유효기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통지방법	인터넷 전자메일, 우편, FAX로 통지														
신청제한 및 반려대상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수입 시마다 성분 조성이 다른 경우)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4.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물품분석에 필요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물품분석에 필요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통지방법	인터넷 전자메일, 우편, FAX로 통지														
신청제한 및 반려대상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수입 시마다 성분 조성이 다른 경우)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4.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물품분석에 필요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물품분석에 필요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0p	\부·류 및 절의 구성\ - 중 략 - 2) 류(類 : Chapter) ① 제1부에서 제21부까지의 대분류된 상품군을 일정한 범위와 체계에 따라 97개의 류로 중분류한 것으로서(77류는 유보), 류의 표제도 부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대부분의 류에 주(Notes)가 설정되어 있다. 다만, 제50류, 제52류, 제53류, 제81류, 제88류의 5개 류에는 주가 없다(제52류, 제81류, 제88류에는 소호주만 있다). ② 류의 구조 역시 일반적으로 부와 같은 산업별 형태를 유지하면서 재료종류, 가공 형태, 용도 등에 따라 세분화된 분류구조로 되어 있다. - 하 략 -	\부·류 및 절의 구성\ - 중 략 - 2) 류(類 : Chapter) ① 제1부에서 제21부까지의 대분류된 상품군을 일정한 범위와 체계에 따라 97개의 류로 중분류한 것으로서(77류는 유보), 류의 표제도 부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대부분의 류에 주(Notes)가 설정되어 있다. 다만, 제50류, 제52류, 제53류, 제75류, 제76류, 제78류, 제79류, 제80류, 제81류의 9개 류에는 주가 없다(제52류, 제75류, 제76류, 제78류, 제79류, 제80류에는 소호주만 있다). ② 류의 구조 역시 일반적으로 부와 같은 산업별 형태를 유지하면서 재료종류, 가공 형태, 용도 등에 따라 세분화된 분류구조로 되어 있다. - 하 략 -	개정반영
33p	③ 특정 부·류·호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범위와 한계를 지정한다. - 중 략 - 특정 호 내에서만 적용되는 용어 • 제85류 주5 나 : 제8523호에서 “스마트카드”란 하나 이상의 칩 형태 전자집적회로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램(RAM)이나 롬(ROM)]을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이하 생략) 특정 소호 내에서만 적용되는 용어 특정 소호 내에서만 적용되는 용어 • 제84류 소호주2 : 소호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란 제84류의 주 제5호타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 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 장치나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③ 특정 부·류·호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범위와 한계를 지정한다. - 중 략 - 특정 호 내에서만 적용되는 용어 • 제85류 주6 나 : 제8523호에서 “스마트카드”란 하나 이상의 칩 형태 전자집적회로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램(RAM)이나 롬(ROM)]을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이하 생략) 특정 소호 내에서만 적용되는 용어 특정 소호 내에서만 적용되는 용어 • 제84류 소호주2 : 소호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란 제84류의 주 제5호제6호타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 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 장치나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개정반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3p	④ 특정한 부·류·호 또는 일군의 호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물품의 리스트를 지정해 주고 있다. • 제20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나.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다. 베이커리 제품과 그 밖의 제1905호의 제품 라.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④ 특정한 부·류·호 또는 일군의 호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물품의 리스트를 지정해 주고 있다. • 제20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제15류) 다.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라. 베이커리 제품과 그 밖의 제1905호의 제품 마.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개정반영								
43p	3) 적용사례 ① 제3924호(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 이 호에는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예 : 접시) 뿐만 아니라, 테두리에 타 재료(예 : 금속)가 결합된 것도 이 호에 포함 ② 제4204호(가죽 제품) : 전부가 가죽 제품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재료나 물질이 결합된 것도 가죽제품에 포함 ③ 제4503호(천연코르크의 제품) : 전부가 천연코르크로 된 것 뿐만 아니라 금속제·플라스틱제 등의 캡이 부착된 천연 코르크로 만든 마개와 파라핀으로 도포된 천연코르크 마개도 포함	3) 적용사례 ① 제3924호(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 이 호에는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예 : 접시) 뿐만 아니라, 테두리에 타 재료(예 : 금속)가 결합된 것도 이 호에 포함 ② 제4205호(가죽 제품) : 전부가 가죽 제품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재료나 물질이 결합된 것도 가죽제품에 포함 ③ 제4503호(천연코르크의 제품) : 전부가 천연코르크로 된 것 뿐만 아니라 금속제·플라스틱제 등의 캡이 부착된 천연 코르크로 만든 마개와 파라핀으로 도포된 천연코르크 마개도 포함	오류정정								
45p	＼구체적인 표현의 예시(더 완전하거나 명백한 표현)＼ <table><tr><td>자동차용의 식물제 터프트한 양탄자</td><td>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로 분류한다.</td></tr><tr><td>항공기용 타이어</td><td>제8803호(항공기용 부분품)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4011호(신품) 또는 제4012호(재생이나 중고품)로 분류한다.</td></tr></table>	자동차용의 식물제 터프트한 양탄자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로 분류한다.	항공기용 타이어	제8803호 (항공기용 부분품)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4011호(신품) 또는 제4012호(재생이나 중고품)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표현의 예시(더 완전하거나 명백한 표현)＼ <table><tr><td>자동차용의 식물제 터프트한 양탄자</td><td>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로 분류한다.</td></tr><tr><td>항공기용 타이어</td><td>제8807호(항공기용 부분품)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4011호(신품) 또는 제4012호(재생이나 중고품)로 분류한다.</td></tr></table>	자동차용의 식물제 터프트한 양탄자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로 분류한다.	항공기용 타이어	제8807호 (항공기용 부분품)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4011호(신품) 또는 제4012호(재생이나 중고품)로 분류한다.	개정반영
자동차용의 식물제 터프트한 양탄자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로 분류한다.										
항공기용 타이어	제8803호 (항공기용 부분품)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4011호(신품) 또는 제4012호(재생이나 중고품)로 분류한다.										
자동차용의 식물제 터프트한 양탄자	제8708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로 분류한다.										
항공기용 타이어	제8807호 (항공기용 부분품)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4011호(신품) 또는 제4012호(재생이나 중고품)로 분류한다.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46p	\\품명(Name)이나 더 완전하거나 명백하게 표현된 호의 예시\\ <table><tr><th>대상제품</th><th>종류 또는 일반적 표현</th><th>품명 또는 완전(명백)한 표현</th></tr><tr><td></td><td> - 수지식 전동공구 (제8467호) - 가정용 전기기기 (제8509호) </td><td>전기면도기 (제8510호)</td></tr><tr><td></td><td>차량용 부품품 (제8708호)</td><td>터프트한 양탄자 (제5703호)</td></tr><tr><td></td><td>항공기용 부분품 (제8803호)</td><td>항공기용 타이어 (제4011호)</td></tr></table>	대상제품	종류 또는 일반적 표현	품명 또는 완전(명백)한 표현		- 수지식 전동공구 (제8467호) - 가정용 전기기기 (제8509호)	전기면도기 (제8510호)		차량용 부품품 (제8708호)	터프트한 양탄자 (제5703호)		항공기용 부분품 (제8803호)	항공기용 타이어 (제4011호)	\\품명(Name)이나 더 완전하거나 명백하게 표현된 호의 예시\\ <table><tr><th>대상제품</th><th>종류 또는 일반적 표현</th><th>품명 또는 완전(명백)한 표현</th></tr><tr><td></td><td> - 수지식 전동공구 (제8467호) - 가정용 전기기기 (제8509호) </td><td>전기면도기 (제8510호)</td></tr><tr><td></td><td>차량용 부품품 (제8708호)</td><td>터프트한 양탄자 (제5703호)</td></tr><tr><td></td><td>항공기용 부분품 (제8807호)</td><td>항공기용 타이어 (제4011호)</td></tr></table>	대상제품	종류 또는 일반적 표현	품명 또는 완전(명백)한 표현		- 수지식 전동공구 (제8467호) - 가정용 전기기기 (제8509호)	전기면도기 (제8510호)		차량용 부품품 (제8708호)	터프트한 양탄자 (제5703호)		항공기용 부분품 (제8807호)	항공기용 타이어 (제4011호)	개정반영
대상제품	종류 또는 일반적 표현	품명 또는 완전(명백)한 표현																									
	- 수지식 전동공구 (제8467호) - 가정용 전기기기 (제8509호)	전기면도기 (제8510호)																									
	차량용 부품품 (제8708호)	터프트한 양탄자 (제5703호)																									
	항공기용 부분품 (제8803호)	항공기용 타이어 (제4011호)																									
대상제품	종류 또는 일반적 표현	품명 또는 완전(명백)한 표현																									
	- 수지식 전동공구 (제8467호) - 가정용 전기기기 (제8509호)	전기면도기 (제8510호)																									
	차량용 부품품 (제8708호)	터프트한 양탄자 (제5703호)																									
	항공기용 부분품 (제8807호)	항공기용 타이어 (제4011호)																									
47p 13번째줄	- 중 략 - 또한 제4010호와 제5910호와의 관계에서는 제4010호가 우선한다. 그 이유는 제59류 주 제6호나목에서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식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전동용 벨트는 제5910호에 적용하지 않고 제4010호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통칙 제3호나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통칙 제1호(제59류 주 제6호나목)에 따라 제4010호로 분류한다.²⁰⁾ 20) 제59류 주 제6호 제5910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방식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팅(belting)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식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식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제4010호)	- 중 략 - 또한 제4010호와 제5910호와의 관계에서는 제4010호가 우선한다. 그 이유는 제59류 주 제7호나목에서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식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전동용 벨트는 제5910호에 적용하지 않고 제4010호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통칙 제3호나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통칙 제1호(제59류 주 제7호나목)에 따라 제4010호로 분류한다.²⁰⁾ 20) 제59류 주 제7호 제5910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방식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팅(belting)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식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식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제4010호)	개정반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52p	(2) 주의 규정 적용사례 ① 제6부 주 제3호 : 세트물품은 제6부 또는 제7부로 분류 ② 제7부 주 제1호 : 세트물품은 제6부 또는 제7부로 분류 ③ 제61류 주 제3호 : 슈트와 양상בל을 세트의류로 제6103호나 제6104호로 분류 ④ 제62류 주 제6호 : 스키슈트를 제6211호로 분류 ⑤ 제82류 주 제3호 : 제8211호와 제8215호가 세트를 구성할 때 제8215호로 분류	(2) 주의 규정 적용사례 ① 제6부 주 제3호 : 세트물품은 제6부 또는 제7부로 분류 ② 제7부 주 제1호 : 세트물품은 제6부 또는 제7부로 분류 ③ 제61류 주 제3호 : 슈트와 양상בל을 세트의류로 제6103호나 제6104호로 분류 ④ 제62류 주 제6호 제7호 : 스키슈트를 제6211호로 분류 ⑤ 제82류 주 제3호 : 제8211호와 제8215호가 세트를 구성할 때 제8215호로 분류	개정반영
71p	2. 제1류 주 규정 주 제1호 제외물품 - 중 략 - 제1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 있는 동물(식용이나 그 밖의 용도)을 분류한다. (1)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2)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그 밖의 물품 (3) 서커스·관람용 동물원이나 그 밖의 유사한 순회 동물쇼단(travelling animal shows)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동물(제9508호) 운송 도중에 죽은 동물은 그들이 식용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0201호부터 제0205호까지와, 제0207호나 제0208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제0511호에 분류한다.	2. 제1류 주 규정 주 제1호 제외물품 - 중 략 - 제1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 있는 동물(식용이나 그 밖의 용도)을 분류한다. (1)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2)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그 밖의 물품 (3) 서커스·관람용 동물원이나 그 밖의 유사한 순회 동물쇼단(travelling animal shows)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동물(제9508호) 운송 도중에 죽은 동물(곤충을 포함한다)은 그것들이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0201호부터 제0205호까지와, 제0207호, 제0208호나 제0410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제0511호에 분류한다.	개정반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75p	제3류 어 류 - 제0301호 활 어 - 제0302호 신선 · 냉장 어류 - 제0303호 냉동 어류 - 제0304호 신선 · 냉장 · 냉동한 것 - 어류의 필레(fillet) - 그 밖의 어육 - 제0305호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운제한 어류 (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제0307호 연체동물 - 제0308호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 제0306호 갑각류 - 살아 있는 것 ·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 염수장 · 훈제한 것 - 제0309호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가루·거친 가루와 펠릿(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	제3류 어 류 - 제0301호 활 어 - 제0302호 신선 · 냉장 어류 - 제0303호 냉동 어류 - 제0304호 신선 · 냉장 · 냉동한 것 - 어류의 필레(fillet) - 그 밖의 어육 - 제0305호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 (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제0307호 연체동물 - 제0308호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 제0306호 갑각류 - 살아 있는 것 · 신선 · 냉장 · 냉동 · 건조 · 염장 · 염수장 · 훈제한 것 - 제0309호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가루·거친 가루와 펠릿(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	제0305호 오타 수정
78p	제4류 낙 농 품 밀크와 크림 - 제0401호 농축하지 않은것이나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 제0402호 농축하거나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 - 제0402호 요구르트, 버터밀크 ·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그밖의 발효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이하동일-	제4류 낙 농 품 밀크와 크림 - 제0401호 농축하지 않은것이나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 제0402호 농축하거나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 제0403호 요구르트, 버터밀크 ·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그밖의 발효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이하동일-	제0403호 오타 수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84p	주 제3호 아이보리(ivory)의 정의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해마·일각고래·산돼지의 엄니, 서각과 모든 동물의 이[齒, teeth]는 아이보리(ivory)로 본다.	주 제3호 아이보리(ivory)의 정의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바다코끼리·일각고래·산돼지의 엄니, 코뿔소의 뿔과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ivory)로 본다.	개정반영
99p 표 아래	제11류에는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을 분류하며, 총 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제분공업(製粉工業)이란 주로 곡물이나 채두류 등을 분쇄하여 조리가공하기 쉬운 고운가루나 거친 가루(粗粉)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내용 추가-	제11류에는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을 분류하며, 총 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제분공업(製粉工業)이란 주로 곡물이나 채두류 등을 분쇄하여 조리가공하기 쉬운 고운가루나 거친 가루(粗粉)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류에 분류되는 곡물의 제분생산품은 성분상 전분함량이 45% 초과하고, 회분함량이 곡물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5% 이하인 물품이 분류된다(제11류 주2호 가목). 또한 그 가공 상태는 분(고운 가루)(Flour), 조분(거친 가루)(Meal), 분쇄물(부순 알곡)(Groats), 펠릿(Pellets), 플레이크(Flakes), 압착, 껍질제거 등이다. 이러한 전분함량과 회분함량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품은 제23류(제2302호)의 제분 잔유물로 분류한다.	중요설명 추가
103p	-“주 제4호” 앞 “주 제3호” 내용 추가-	주 제3호 제1209호의 분류한계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종자, 풀이나 그 밖의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vetches)의 종자[비시아 파바(Vicia faba)종의 것은 제외한다], 루핀(lupine)의 종자는 파종용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파종용이라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 채두류(菜豆類)와 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 향신료와 그 밖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나 제1211호의 물품	중요주 규정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주 제4호 제1211호의 분류범위 제1211호에는 바질·보리지·인삼·히습·감초·민트류·로즈마리·루우(rue)·세이지(sage)·쓴쑥(wormwood)과 이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의약품 나. 제33류의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 다. 제3808호의 살충제·살균제·제초제·소독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주 제4호 제1211호의 분류범위 제1211호에는 바질·보리지·인삼·히습·감초·민트류·로즈마리·루우(rue)·세이지(sage)·쓴쑥(wormwood)과 이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의약품 나. 제33류의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 다. 제3808호의 살충제·살균제·제초제·소독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04p	- 동물성은 제5류가 기존에 존재하여 형평성 때문에 추가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이 류에는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방직용 섬유재료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그 밖의 식물성 재료는 제외한다(제11부). 1. 제14류 호의 용어 <table> <tr> <th>품목번호</th> <th>품 명</th> </tr> <tr> <td>1401</td> <td>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td> </tr> <tr> <td>1404</td> <td>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td> </tr> </table> 2. 제14류 주 규정 주 제1호 제외물품 이 류에서 제11부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와 식물성 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방직용 섬유재료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그 밖의 식물성 재료는 제외한다.	품목번호	품 명	1401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14류 추가
품목번호	품 명								
1401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주 제2호 제1401호의 분류한계 제1401호에는 특히 대나무(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글게 한 것, 표백한 것, 불가연성으로 한 것, 연마하거나 염색한 것을 포함한다)·쪼갠 버드나무 가지(osier)·갈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나무의 심(core), 등나무를 뽑아서 늘리거나 쪼갠 것이 포함되며, 칩우드(chipwood)는 제외한다(제4404호). 주 제3호 제1404호의 제외품목 제1404호에는 목모(木毛)(제4405호)·비·브러시 제조용으로 묶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은 제외한다(제9603호).	
108p	제4부 - 제16류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제18류 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 - 제19류 곡물 · 고운가루 · 전분이나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제20류 채소 · 과일 · 견과류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제21류 각종의 조제식품 - 제22류 음료 · 주류 · 식초 -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사료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4부 - 제16류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제18류 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 - 제19류 곡물 · 고운가루 · 전분이나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제20류 채소 · 과일 · 견과류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제21류 각종의 조제식품 - 제22류 음료 · 주류 · 식초 -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사료 -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제24류 용어 개정반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주 제1호	제외규정	주 제1호	제외규정																																	
109p	이 류에서는 제2류·제3류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과 곤충은 제외한다.		이 류에서 제2류·제3류·제4류 주 제6호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과 곤충은 제외한다.		개정반영																																
	제16류 주 제1호 규정은 제2류, 제3류, 제4류와 제16류에 분류되는 물품의 분류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껍질이 붙은 채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갑각류(제0306호)와 훈제한 육(제0210호)으로서 대강 열처리한 것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에서 조리한 어류(제0305호)는 제16류에서 제외된다. 또한 육과 어류의 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0210호와 제0305호로, 식용에 적합한 상태가 아닌 것은 제2301호로 각각 분류한다. - 하략 -		제16류 주 제1호 규정은 제2류, 제3류, 제4류와 제16류에 분류되는 물품의 분류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증기로 찌거나 물에 삶은 갑각류(제0306호)와 훈제한 육으로서 대강 열처리한 것(제0210호)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에서 조리한 어류(제0305호)·갑각류(제0306호)·연체동물(제0307호)·수생무척추동물(제0308호)는 제16류에서 제외된다. 또한 육과 어류의 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0210호와 제0309호로, 식용에 적합한 상태가 아닌 것은 제2301호로 각각 분류한다. - 하략 -																																		
110p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가공도에 따른 분류</th></tr><tr><th>제2류·제3류</th><th>제16류</th></tr><tr><td rowspan="2">제2류</td><td>육과 식용설육</td><td> -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 -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것 -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처리한 것 -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 제2류 물품 간 혼합물과 복합물 -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 제2류 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예 : 건육통조림) - 제2류 물품을 공기조절 포장한 것 </td><td rowspan="2"> -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 - 조리한 것 :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프라이 한 것, 볶은 것 - 제2류·제3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 단순히 배터(batter) 한 것,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후추 등)한 것 - 껍질을 벗겨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 </td></tr><tr><td>어류</td><td> - 활어·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 -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 제3류 물품 간 혼합물과 복합물 -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 - 제3류 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예 : 훈제연어통조림) - 제3류 물품을 공기조절 포장한 것 </td></tr><tr><td></td><td>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td><td> - 산 것·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것 </td><td></td></tr></table>		구 분		가공도에 따른 분류		제2류·제3류	제16류	제2류	육과 식용설육	-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 -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것 -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처리한 것 -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 제2류 물품 간 혼합물과 복합물 -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 제2류 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예 : 건육통조림) - 제2류 물품을 공기조절 포장한 것	-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 - 조리한 것 :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프라이 한 것, 볶은 것 - 제2류·제3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 단순히 배터(batter) 한 것,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후추 등)한 것 - 껍질을 벗겨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	어류	- 활어·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 -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 제3류 물품 간 혼합물과 복합물 -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 - 제3류 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예 : 훈제연어통조림) - 제3류 물품을 공기조절 포장한 것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 산 것·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것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가공도에 따른 분류</th></tr><tr><th>제2류·제3류</th><th>제16류</th></tr><tr><td rowspan="2">제2류</td><td>육과 식용설육</td><td> -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 -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것 -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처리한 것 -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 제2류 물품 간 혼합물과 복합물 -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 제2류 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예 : 건육통조림) - 제2류 물품을 공기조절 포장한 것 </td><td rowspan="2"> -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 - 조리한 것 :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프라이 한 것, 볶은 것 - 제2류·제3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 단순히 배터(batter) 한 것,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후추 등)한 것 - 껍질을 벗겨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 </td></tr><tr><td>어류</td><td> - 활어·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 -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 제3류 물품 간 혼합물과 복합물 -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 - 제3류 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예 : 훈제연어통조림) - 제3류 물품을 공기조절 포장한 것 </td></tr><tr><td></td><td>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td><td> - 산 것·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 </td><td></td></tr></table>		구 분		가공도에 따른 분류		제2류·제3류	제16류	제2류	육과 식용설육	-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 -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것 -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처리한 것 -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 제2류 물품 간 혼합물과 복합물 -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 제2류 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예 : 건육통조림) - 제2류 물품을 공기조절 포장한 것	-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 - 조리한 것 :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프라이 한 것, 볶은 것 - 제2류·제3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 단순히 배터(batter) 한 것,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후추 등)한 것 - 껍질을 벗겨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	어류	- 활어·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 -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 제3류 물품 간 혼합물과 복합물 -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 - 제3류 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예 : 훈제연어통조림) - 제3류 물품을 공기조절 포장한 것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 산 것·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		개정 반영
구 분		가공도에 따른 분류																																			
		제2류·제3류	제16류																																		
제2류	육과 식용설육	-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 -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것 -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처리한 것 -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 제2류 물품 간 혼합물과 복합물 -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 제2류 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예 : 건육통조림) - 제2류 물품을 공기조절 포장한 것	-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 - 조리한 것 :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프라이 한 것, 볶은 것 - 제2류·제3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 단순히 배터(batter) 한 것,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후추 등)한 것 - 껍질을 벗겨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																																		
	어류	- 활어·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 -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 제3류 물품 간 혼합물과 복합물 -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 - 제3류 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예 : 훈제연어통조림) - 제3류 물품을 공기조절 포장한 것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 산 것·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것																																			
구 분		가공도에 따른 분류																																			
		제2류·제3류	제16류																																		
제2류	육과 식용설육	-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 -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것 -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처리한 것 -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 제2류 물품 간 혼합물과 복합물 -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 제2류 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예 : 건육통조림) - 제2류 물품을 공기조절 포장한 것	-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 - 조리한 것 :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프라이 한 것, 볶은 것 - 제2류·제3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 단순히 배터(batter) 한 것,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후추 등)한 것 - 껍질을 벗겨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																																		
	어류	- 활어·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 -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 제3류 물품 간 혼합물과 복합물 -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 - 제3류 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예 : 훈제연어통조림) - 제3류 물품을 공기조절 포장한 것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 산 것·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12p	주 제1호 제외물품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蔗糖)·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와 기타 물품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약품	주 제1호 제외물품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蔗糖)·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와 그 밖의 물품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그 밖의 의약품	개정 반영																												
113p	1. 제18류 호의 용어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1801</td><td>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td></tr><tr><td>1802</td><td>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td></tr><tr><td>1803</td><td>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td></tr><tr><td>1804</td><td>코코아 버터[지(fat)와 유(oil)]</td></tr><tr><td>1805</td><td>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td></tr><tr><td>1806</td><td>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4	코코아 버터[지(fat)와 유(oil)]	1805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 제18류 호의 용어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1801</td><td>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td></tr><tr><td>1802</td><td>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td></tr><tr><td>1803</td><td>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td></tr><tr><td>1804</td><td>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td></tr><tr><td>1805</td><td>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td></tr><tr><td>1806</td><td>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4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805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개정 반영
품목번호	품 명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4	코코아 버터[지(fat)와 유(oil)]																														
1805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품목번호	품 명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4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805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28p	주 제1호 제외물품 제24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이 류에서 의약품 궤련은 제외한다(제30류). 2. 제2404호와 이 류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제2404호에 분류한다. 3. 제2404호에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한다는 것은 가열장치나 다른 수단을 통해 연소 없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 제1호 제외물품 이 류에서 의약품 궤련은 제외한다(제30류). 주 제2호 제2404호 우선분류 제2404호와 이 류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2404호에 분류한다. 주 제3호 제2404호의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 정의 제2404호에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한다는 것은 가열장치나 다른 수단을 통해 연소 없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반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29p	 관세청 사례 전자담배 SET - 내용 동일 - - 참고 내용 추가 -	 관세청 사례 전자담배 SET - 내용 동일 - <참고> 1. 일회용 전자담배[일회용 e-담배(disposable e-cigarette)]와 이와 유사한 일회용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로서, 하우징 안에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물질[예: e-용액(e-liquid)·겔(gel)]을 결합하고 있으며, 다 사용하거나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 폐기처분하는 것(다시 채우거나 재충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2404호) 2. 액체나 용액을 포함하고 있는 카트리지(cartridge)나 탱크(tank)[다른 구성부품(예: 가열용 부품이나 '아토마이저(atomiser)')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로서, 전자담배나 이와 비슷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제2404호)	내용추가								
136p	1. 품목분류체계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2707</td><td>오일(oils)과 그 밖의 고온 콜타르(coal tar)의 증류물, 이와 유사한 생산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2707	오일(oils)과 그 밖의 고온 콜타르(coal tar)의 증류물, 이와 유사한 생산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품목분류체계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2707</td><td>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오류정정
품목번호	품 명										
2707	오일(oils)과 그 밖의 고온 콜타르(coal tar)의 증류물, 이와 유사한 생산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	품 명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37p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2710</td><td>석유와 역청유(癭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나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본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오일(waste oils)</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2710	석유와 역청유(癭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나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본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오일(waste oils)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2710</td><td>석유와 역청유(癭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癭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2710	석유와 역청유(癭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癭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오류정정
품목번호	품 명										
2710	석유와 역청유(癭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나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본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오일(waste oils)										
품목번호	품 명										
2710	석유와 역청유(癭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癭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147p	- 신규 내용 추가 -	 3 각 류별 품목분류 체계 해설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 중 략 -	6부 내용 일부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 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 중 략 - ※ 개정표 2. 주요 추가내용 49 페이지 상세내용 확인	
150p	2. 플라스틱(또는 고무)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한 물품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한 물품(다만, 제39류 주 제9호에 해당 하는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는 제3918호로 분류한다)의 품목분류는 대 표적으로 제56류 주 제3호와 제59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 의 물품은 방직용 섬유와 결합된 주 원재료(플라스틱 또는 고무)에 따라 제39류 또는 제40류에 포함된다.	2. 플라스틱(또는 고무)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한 물품 플라스틱(또는 고무)과 방직용 섬유가 결합한 물품(다만, 제39류 주 제9 호에 해당하는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는 제3918호로 분류한다)의 품목 분류는 대표적으로 제56류 주 제3호와 제59류 주 제2호·주 제3호·주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물품은 방직용 섬유와 결합된 주 원재 료(플라스틱 또는 고무)에 따라 제39류·제40류 또는 제56류·제59류에 분류된다.	내용 정정
151p	<제56류 주 제3호> - 내용 동일 - <제59류 주 제2호> - 내용 동일 -	<제56류 주 제3호> - 내용 동일 - <제59류 주 제2호> - 내용 동일 - <제59류 주 제3호> 제5903호에서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하나 이상의 직물 층과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을 조합해 만든 제품으로서, 어떠한 방 법으로든 이들 층을 함께 접착하여 결합한 것이다(그 횡단면에서 이들 플라스 틱 시트나 필름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는 상관없다).	59류주2호 다음에 주규정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제59류 주 제5호> 제5906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직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0류),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1) 1제곱미터 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것 2) 1제곱미터 당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며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나. 제5604호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실·스트립(strip)·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 다. 고무로 응결시킨 방직용 섬유사를 병렬로 놓아 만든 직물류(제곱미터당 중량에 상관없다)	
153p 16번째줄	커.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단추·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빗·흡연용 파이프의 마우스피스와 자루·시가렛홀더나 이와 유사한 것·보온병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펜·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	커.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단추·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빗·흡연용 파이프의 마우스피스와 자루·시가렛홀더나 이와 유사한 것·진공플라스크나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펜·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 및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오류정정
158p	제3923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이나 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그 밖의 덮개	제3923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이나 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오류정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60p	1 제40류 품목분류 체계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4017</td><td>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4017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1 제40류 품목분류 체계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4017</td><td>각종 모양의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경질고무의 제품</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4017	각종 모양의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경질고무의 제품	오류정정
품목번호	품 명										
4017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품목번호	품 명										
4017	각종 모양의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경질고무의 제품										
170p	3 제11부 주 규정 제11부에는 14개의 부주와 2개의 소호주가 있다. 이 주 규정은 특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제한된 지면관계로 일부의 부주와 일부의 소호주는 생략한다.	3 제11부 주 규정 제11부에는 15개의 부주와 2개의 소호주가 있다. 이 주 규정은 특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제한된 지면관계로 일부의 부주와 일부의 소호주는 생략한다.	개정 반영								
175p	- 주 제14호. 소매용 세트의 분류기준 다음 -	주 제15호 전자적 구성요소를 장착한 의류의 분류기준 제11부 주 제1호를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의류·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화학적·기계적·전자적 구성요소를 장착한 것은 제11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불박이로 된 것이든 섬유나 직물 내에 결합된 것이든 상관없다). 다만, 이들이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반영								
191P	주 제1호 제외물품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종 략 - 바.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탐폰, 냅킨, 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주 제1호 제외물품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종 략 - 바.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탐폰, 냅킨(기저귀)·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오류 정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198p	주 제5호 용어의 정의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 중 략 - - 주 규정 추가 -		주 제5호 용어의 정의(세폭직물)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 중 략 - 주 제6호 용어의 정의(자수천) 제5810호에서 "자수천"이란 특히 방직용 섬유직물류의 바탕천에 금속사나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시퀀(sequins)·비드(bead)·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물품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motif)를 꿰매어서 아프리케(applique)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바느질한 태피스트리(tapestry)를 적용하지 않는다(제5805호).		내용 추가 <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12p 1번째줄	예를 들면, 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모피·우피·가죽·플라스틱·금속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부분품이 있는 경우에도 이 류의 물품으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재료가 장식품 이상으로 구성된 물품은 관계 류의 주[특히 모피와 새의 깃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제43류의 주 제4호와 제67류의 주 제2호의 (b)]에 따라 분류하거나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면, 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모피·우피·가죽·플라스틱·금속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부분품이 있는 경우에도 이 류의 물품으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재료가 단순한 장식품 이상으로 구성된 물품은 관계 류의 주[특히 모피와 새의 깃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제43류의 주 제4호와 제67류의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오류 정정								
214p	1. 제63류 호의 용어 ＼제1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6306</td><td>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handcraft)용], 캠프용품</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6306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handcraft)용], 캠프용품	1. 제63류 호의 용어 ＼제1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6306</td><td>방수포(tarpaulin)·천막·차양,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돛 [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handcraft)용], 캠프용품</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6306	방수포(tarpaulin)·천막·차양,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돛 [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handcraft)용], 캠프용품	개정 반영
품목번호	품 명										
6306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handcraft)용], 캠프용품										
품목번호	품 명										
6306	방수포(tarpaulin)·천막·차양,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돛 [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handcraft)용], 캠프용품										
219p 각주	56)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끈(제5607호), 레이스(제5804호), 품풍과 장식용 트리밍(제5808호)	56)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끈(제5607호, 제5609호), 레이스(제5804호, 제6307호), 품풍과 장식용 트리밍(제5808호)	각주 오류 정정								
220p	소호주 제1호 스포츠용 신발류의 적용범위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와 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란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spikes)·스프리그(sprigs)·스톱(stops)·클립(clips)·바(bars)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류 나.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ski boots)와 그로스컨트리 스키신발류(ski footwear)·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와 사이클 신발(cycling shoes)	소호주 제1호 스포츠용 신발류의 적용범위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와 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란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	오류 정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26p 맨 아래	- 주 규정 추가 -	주 제9호 '봉'·'프로파일'·'선'·'판·시트·스트립·박'·'관'의 정의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편평화한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하며, 이들은 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것이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에 걸쳐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진 주조 제품이나 소결(燒結)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 이외의 다른 연속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제74류의 와이어바(wire-bar)와 빌릿(billet)으로서 선재[와이어로드(wire-rod)]나 관(管) 등으로 제조할 때 단순히 기계에 투입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한 것은 제7403호의 구리의 괴(塊)로 본다. 이 규정은 제81류에 해당하는 물품에도 준용한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나 형조(形造)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위와 동일한 모양을 가진 주조 제품이나 소결(燒結)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	신설 주 규정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de-scaling) 이외의 다른 연속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편평화한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하며, 이들은 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것이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에 걸쳐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의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는 호는 특히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을 낸 것·연마한 것이나 도포한 것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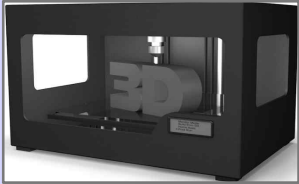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마. 관(管)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 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227p	3 범용성 부분품 (1) 개 요 - 중 략 - 그러나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은 별도 제시되는 경우 관련 제품의 부분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 부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부의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중앙난방식 라디에이터의 전용 볼트와 자동차 전용 스프링의 경우에 적용된다. 볼트는 제7318호의 볼트로 분류하고 제7322호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스프링은 제7320호의 스프링으로 분류하고 제8708호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더불어 범용성 부분품은 특정 물품에 적합하도록 제조되었더라도 별도로 제시되면 이 원칙을 적용하며, 비(卑)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분품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범용성 부분품 (1) 개 요 - 중 략 - 그러나 제15부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은 별도 제시되는 경우에는 관련 제품의 부분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 부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중앙난방식 라디에이터의 전용 볼트와 자동차 전용 스프링의 경우에 적용된다. 볼트는 제7318호의 볼트로 분류하고 제7322호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스프링은 제7320호의 스프링으로 분류하고 제8708호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더불어 범용성 부분품은 특정 물품에 적합하도록 제조되었더라도 별도로 제시되면 이 원칙을 적용하며, 비(卑)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분품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오류 정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28p	📖 범용성 부분품의 일람표 - 중 략 - • 제8301호 :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다이얼이나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으로 만든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열쇠 비금속제의 자물쇠와 열쇠 • 제8302호 :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제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캐스터,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클로저(door closer) • 제8306호 : 비(卑)금속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 제8308호 : 비(卑)금속으로 만든 유금·유금이 붙은 프레임·버클·버클유금·훅·아이·아이릿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일·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관 리벳이나 이코(二股)리벳, 구슬과 스팽글 • 제8310호 : 비(卑)금속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표지판(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 중 략 -		📖 범용성 부분품의 일람표 - 중 략 - • 제8301호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 제8302호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 제8306호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 제8308호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신발류·신변장식용품·손목시계·서적·차양·가족제품·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spangle) • 제8310호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 중 략 -	오류 정정											
	236p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7310</td><td>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td></tr><tr><td>7319</td><td>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돛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 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 캔·상자 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돛바늘· 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 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7310</td><td>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td></tr><tr><td>7319</td><td>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돛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 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 은 것으로 한정한다)</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 캔·상자 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돛바늘· 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 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 은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		품 명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 캔·상자 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돛바늘· 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 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	품 명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 캔·상자 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돛바늘· 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 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 은 것으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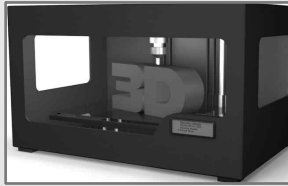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41p	주 제3호 우선 분류규정 제8211호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되는 제품이 최소한 같은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로 분류한다.	주 제3호 우선 분류규정 제8211호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로 분류한다.	오류 정정
245p	1. 품목분류체계 제16부 - 제84류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 음성 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제16부는 단지 두 개의 류만 존재하나 관세율표 전체 1,222개 호의 11%인 131개의 호(제84류 : 85개 호, 제85류 : 46개 호)로 구성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1. 품목분류체계 제16부 - 제84류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 음성 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제16부는 단지 두 개의 류만 존재하나 관세율표 전체 1,228개 호의 약 11%인 134개의 호(제84류 : 86개 호, 제85류 : 48개 호)로 구성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개정 반영
248p	[예시 2] 집단 부분품호를 분류하는 사례 ①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 ②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류 부분품(제8431호) ③ 제8444호부터 제8447호까지의 섬유기계 부분품(제8448호) ④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 부분품(제8466호) ⑤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 ⑥ 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 ⑦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제8522호) ⑧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제8529호) ⑨ 제8535호·제8536호나 제8537호의 기기 부분품(제8538호)	[예시 2] 집단 부분품호를 분류하는 사례 ①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 ②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류 부분품(제8431호) ③ 제8444호부터 제8447호까지의 섬유기계 부분품(제8448호) ④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 부분품(제8466호) ⑤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 ⑥ 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 ⑦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제8522호) ⑧ 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제8529호) ⑨ 제8535호·제8536호나 제8537호의 기기 부분품(제8538호)	개정 반영
251p	2. 다용도 기계(Multi purpose machine) 분류기준(제84류 주 제7호)	2. 다용도 기계(Multi purpose machine) 분류기준(제84류 주 제8호)	개정 반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53p	\복합기계를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실례\				\복합기계를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실례\				오류 정정
	구분	유 형	주 기계	보조기계	구분	유 형	주 기계	보조기계	
	복합 기계	종이 접는 기계(제8441호)와 결합된 인쇄기계(제8443호)	인쇄기계	종이접는기계	복합 기계	종이 접는 기계(제8441호)와 결합된 인쇄기계(제8443호)	인쇄기계	종이접는기계	
		이름 또는 간단한 도안용의 인쇄기계(제8443호)와 결합한 판지제의 상자 제조기계(제8441호)	상자제조기계	인쇄기계		이름 또는 간단한 도안용의 인쇄기계(제8443호)와 결합한 판지제의 상자 제조기계(제8441호)	상자제조기계	인쇄기계	
		양하용·하역용 기계(제8425호)와 결합된 공업용 노(爐)(제8417호나 제8514호)	공업용 노	하역용 기계		양하용·하역용 기계(제8428호)와 결합된 공업용 노(爐)(제8417호나 제8514호)	공업용 노	하역용 기계	
포장기계(제8422호)와 결합된 담배제조기(제8478호)		담배제조기	포장기계	포장기계(제8422호)와 결합된 담배제조기(제8478호)		담배제조기	포장기계		
259p	1 총 설 이 장에서는 제84류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에 관하여 설명하며, 제84류는 총 8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제84류는 이해의 편의와 구분을 위하여 기능이나 용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8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총 설 이 장에서는 제84류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에 관하여 설명하며, 제84류는 총 8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제84류는 이해의 편의와 구분을 위하여 기능이나 용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8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반영
	264p	품목번호	품 명			품목번호	품 명		
848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5	적층제조기계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68p	주 제5호 용어의 정의 제8462호에서 평판제품용 "슬리팅(slitting) 설비"란 코일 풀기용 기계·코일 편평기·슬리터(slitter)·코일 감기용 기계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평판제품용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란 코일 풀기용 기계·코일 편평기·전단기(剪斷機)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 내용 추가 -	주 제5호 용어의 정의 제8462호에서 평판제품용 "슬리팅(slitting) 설비"란 코일 풀기용 기계·코일 편평기·슬리터(slitter)·코일 감기용 기계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평판제품용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란 코일 풀기용 기계·코일 편평기·전단기(剪斷機)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① 평판제품용 슬리팅(slitting) 설비 두 개의 실린더 모양의 롤(rolls)을 리브(ribs)와 그루브(grooves)에 일치시켜 커다란 금속의 롤을 절단함으로써 여러 개의 폭이 더 작은 롤과 모서리를 절단한 롤로 만드는 가공 설비 ② 평판제품용 일정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길고 편평한 압연된 금속이나 코일 모양의 금속을 절단함으로써 여러 개의 시트로 만드는 가공설비이다. ③ 전단기(shearing machine) 전단 공정은 두 개의 절단 공구(tools)의 동일 평면에 있는 사용면들을 절단할 금속에 수직으로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내용 추가
272p 표 아래	제8409호는 제16부 주 제2호 설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도의 4단위 부분품 호 중 대표적인 예이다. 이 호에는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입밸브나 배기밸브, 흡입이나 배기 매니폴드(다기관), 피스톤링, 연접봉, 기화기, 연료용 노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인젝션펌프(제8413호) ② 엔진 크랭크샤프트·캠 샤프트(제8483호), 기어박스(제8483호) ③ 전기점화용 장비나 시동용 장비(점화플러그와 예열플러그를 포함한다)(제8511호)	제8409호는 제16부 주 제2호 설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도의 4단위 부분품 호 중 대표적인 예이다. 이 호에는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입밸브나 배기밸브, 흡입이나 배기 매니폴드(다기관), 피스톤링, 연접봉, 기화기, 연료용 노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① 인젝션펌프(제8413호) ② 엔진 크랭크샤프트·캠 샤프트(제8483호), 기어박스(제8483호) ③ 전기점화나 시동용기기[점화플러그와 예열 플러그(glow plug)를 포함한다](제8511호)	오류 정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76p	(2) 액체나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이 호로 분류되는 여과기나 청정기는 운동부분(moving parts)이 없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 모든 유형의 여과기와 청정기가 포함되며 거대한 공업용 설비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거기도 포함한다.	(2) 액체나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기계식·화학식·자석식·전자식(電磁式)·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	오류 정정
278p	① 불도저와 앵글도저 : 이들 기계는 주행부(때로는 무한궤도식이다)와 전면에 부착된 큰 날이 일체구조로 결합된 기계장치이다. ② 그레이더와 차균기 : 이들은 보통 전후 양자사이에 장치된 조절 가능한 그레이딩 날(grading blade)에 의하여 지균(地均) 작업이나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설계된 기계이다.	① 불도저와 앵글도저 : 이들 기계는 주행부(때로는 무한궤도식이다)와 전면에 부착된 큰 날이 일체구조로 결합된 기계장치이다. ② 그레이더와 레벨러(leveller) : 이들은 보통 전후 양자사이에 장치된 조절 가능한 그레이딩 날(grading blade)에 의하여 지균(地均) 작업이나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설계된 기계이다.	오류 정정
287p	⑨ 제85류의 주 제9호나목 (2)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요소에 의해 구성되지 않고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의 정의[제85류의 주 제9호 (4)참조]에 일치하지 않으면서 고유기능을 갖지 않은 채 전용되거나 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전자기억모듈[예: SIMMs(단일인라인기억 모듈)과 DIMMs (복수인라인기억모듈)]	⑨ 제85류의 주 제12호나목 (2)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요소에 의해 구성되지 않고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의 정의[제85류의 주 제12호나목 (4)참조]에 일치하지 않으면서 고유기능을 갖지 않은 채 전용되거나 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전자기억모듈[예: SIMMs(단일인라인기억 모듈)과 DIMMs (복수인라인기억모듈)]	개정 반영
288p	 플라스틱을 재료로 하는 프린터의 품목분류 2차원 평면(2D) 플라스틱용 프린터(제8443호) - 플라스틱을 직물·벽지·포장지·고무·플라스틱 판·리놀륨·가죽 등에 인쇄하는 프린터 3차원 형상(3D) 제품 성형기(제8477호) 3D 프린터(제8477호) 단, 석고 가루용 성형기는 제8474호, 플라스틱*용 형상 성형기는 제8479호에 분류 * 플라스틱 : 석고로 만드는 칠벽재. 광물질의 분말과 물을 섞어 물을 섞어 바르는 재료	- 개정을 반영하여 제8485호의 내용으로 이동 및 수정 -	개정 반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92p	- 제8484호와 제8486호 사이에 내용 추가 -	제8485호 적층제조기계 이 호에는 적층 제조(3D 프린팅이라고도 한다)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를 분류하는데, 적층 제조는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물리적 대상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이 기계는 기계에 제공되는 디자인 파일을 기초로 하여 재료를 연속적으로 부가·적층하고 경화·응고시켜 대상을 창출한다. 기계의 형태나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이러한 양식으로 의료 장치, 인공 장기, 예술품, 화기(firearm), 건축물과 그 부분품, 의복과 부분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종류의 목적물을 창출할 수 있다. 이 호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적층제조기계를 분류한다. (1) 접착재 분사 방식 기계(binder jetting machine) (2) 광경화조형기(光硬化造形機)(stereolithography machine) (3) 재료 분사 방식 기계(material jetting machine) (4) 재료 압출방식 기계(material extrusion machine) (5) 분말 베드 용해방식 기계(powder bed fusion machine) (6) 판재적층 방식의 기계로서 시트(보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를 적층하고, 구체적인 3차원의 목적물을 생성하기 위해 디지털 모델에 따라 그 층들을 함께 융합하는 것 (7) 직접식 에너지 적층 기계(directed energy deposition machine)	호설명 및 그림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 플라스틱을 재료로 하는 프린터의 품목분류  2차원 평면(2D) 플라스틱용 프린터(제8443호) - 플라스틱을 직물·벽지·포장지·고무·플라스틱판·리놀륨·가죽 등에 인쇄하는 프린터 3차원 형상(3D) 제품 성형기(제8485호) 3D프린터는 석고 가루용 성형기는 제8474호, 플라스틱 성형기는 제8477호, 플라스틱*용 형상 성형기는 제8479호에 분류하였으나 2022년 개정으로 제8485호로 통합 * 플라스틱 : 석고로 만드는 칠벽재. 광물질의 분말과 물을 섞어 물을 섞어 바르는 재료	
292p	(1)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① 존멜팅과 실리콘 붕 정제를 위한 1회 용융(鎔融)용 로(爐), 웨이퍼 표면 산화를 위한 산화로(爐)와 웨이퍼에 불순물을 도핑하기 위한 확산로(爐)	(1)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① 대상용융(帶狀溶融 : zone melting)과 실리콘 붕 정제를 위한 1회 용융(鎔融)용 로(爐), 웨이퍼 표면 산화를 위한 산화로(爐)와 웨이퍼에 불순물을 도핑하기 위한 확산로(爐)	오류 정정
293p	(2)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장치 - 중 략 - (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장치 - 중 략 -	(2)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중 략 - (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 중 략 -	오류정정
294p	(4) 제84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계와 장치 - 중 략 -	(4) 제84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계와 기기 - 중 략 -	오류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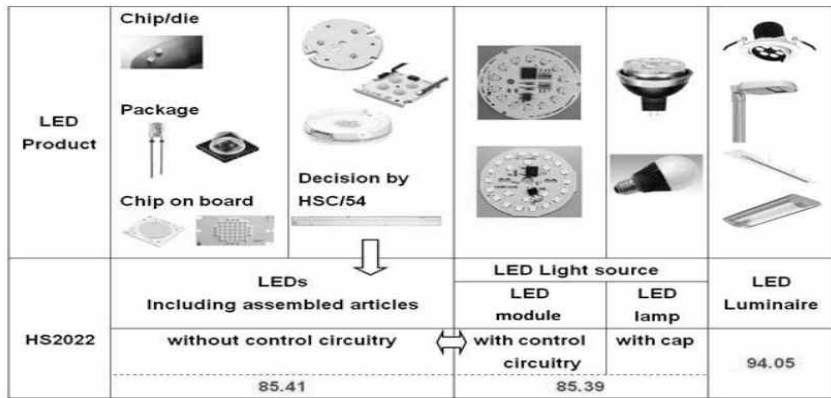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297p	품목번호	품 명	품목번호	품 명	호 추가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4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또한, 이 류에는 특정형의 전열기기[예: 노(爐 : furnace) 등(제8514호)과 난방기기·가정용기기 등(제8516호)]만을 포함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가열식의 기기는 다른 류(주로 제84류)에 분류한다. 예)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제8402호)·공기조절기(제8415호)·배소·증류·그 밖의 기기(제8419호)·캘린더기나 그 밖의 압연기와 그 실린더(제8420호)·가금용의 부란기와 양육기(제8436호)·나무·코르크·가죽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낙인기계(제8479호)·의료용 기기(제9018호) 나아가, 제8523호 해당물품이나 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제85류의 주 제9호나목 (4) 참조]로 간주하지 않는 동시에 그 밖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닌 특정의 전자 메모리모듈[예: SIMMs(Single In-line Memory Modules : 단일 인라인 기억모듈)과 DIMMs(Dual In-line Memory Modules : 복수 인라인 기억모듈)]은 제16부의 주 제2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류에는 특정형의 전열기기[예: 노(爐 : furnace) 등(제8514호)과 난방기기·가정용기기 등(제8516호)]만을 포함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가열식의 기기는 다른 류(주로 제84류)에 분류한다. 예)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제8402호)·공기조절기(제8415호)·배소·증류·그 밖의 기기(제8419호)·캘린더기나 그 밖의 압연기와 그 실린더(제8420호)·가금용의 부란기와 양육기(제8436호)·나무·코르크·가죽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낙인기계(제8479호)·의료용 기기(제9018호) 나아가, 제8523호 해당물품이나 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제85류의 주 제12호나목 (4) 참조]로 간주하지 않는 동시에 그 밖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닌 특정의 전자 메모리모듈[예: SIMMs(Single In-line Memory Modules : 단일 인라인 기억모듈)과 DIMMs(Dual In-line Memory Modules : 복수 인라인 기억모듈)]은 제16부의 주 제2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300p	\여러 기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하는 호\		\여러 기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하는 호\		개정 반영
	품목번호	유 형	품목번호	유 형	
	제8503호	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제8503호	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제8522호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제8522호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제8529호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제8529호	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제8538호	제8535호부터 제8537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제8538호	제8535호부터 제8537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04p	주 제12호 반도체 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정의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4)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주 제12호 반도체 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정의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오류 정정
305p	2)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란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디바이스이다(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와 보호용의 다이오드를 결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제 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엘이디)는 전력공급이나 전력제어를 위한 부품은 장착하고 있지 않다.	2)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란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디바이스이다(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와 보호용의 다이오드를 결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제 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엘이디)는 전력공급이나 전력제어를 위한 부품은 장착하고 있지 않다. 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핑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薄膜)기술이나 후막(厚膜)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등]을 절연재료(유리, 도자제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상호접속자나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결합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 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lead frame)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른 능동 회로소자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누락 주규정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액추에이터(actuator)·오실레이터(oscillator)·공진기(resonator)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제8533호·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되는 유도자,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리드·볼·랜드·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 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 이 정의에서 가) "구성부품"은 개별부품일 수도 있고, 별도로 제조되어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나머지 부분 위에 조립되거나 다른 구성부품에 집적될 수 있다. 나) "실리콘 기반"이란 실리콘 기판 위에 조립되었거나, 실리콘 재료로 제작되었거나 또는 집적회로 다이(die) 위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현상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2) "실리콘 기반 액추에이터(actuator)"는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이다. (3) "실리콘 기반 공진기(resonator)"란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 (4) "실리콘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란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들어지고,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능동 부품을 말한다.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309p	제8507호 축전기(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 중 략 - 그러나 이 호에서는 터미널(제8536호), 수명이 끝난 축전지와 이들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제8548호)은 제외한다.	제8507호 축전기(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 중 략 - 그러나 이 호에서는 터미널(제8536호), 수명이 끝난 축전지와 이들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제8549호)은 제외한다.	개정반영
310p	 제8508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는 장비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부속 장치나 호환성 부분품과 함께 제시될 수도 있다. - 부속장치 : 솔·광택기·해충박멸 스프레이 등의 부속품 - 호환성 부분품 : 카펫 장치·회전식 솔·다기능 흡입 헤드 등 이런 경우 함께 제시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보통 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종류와 수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본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단, 이들 부속품이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에는 그 성질(nature)에 따라 분류한다.	 제8508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는 장비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부속 장치나 호환성 부분품과 함께 제시될 수도 있다. - 부속장치 : 솔·광택기·해충박멸 스프레이 등의 부속품 - 호환성 부분품 : 카펫 장치·회전식 솔·다기능 흡입 헤드 등 이런 경우 함께 제시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보통 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종류와 수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본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단, 이들 부속품이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에는 그 종류(nature)에 따라 분류한다.	오류정정
317p	(3) 반도체 매체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는 하나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내장(內藏)하고 있는데, 이 그룹에는 “외부소스로부터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자료 저장 장치매체”(예 : 플래시 메모리카드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와 “스마트카드”를 포함한다. 이들에 관하여는 제85류 주 제5호가목 참조.	(3) 반도체 매체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는 하나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내장(內藏)하고 있는데, 이 그룹에는 “외부소스로부터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자료 저장 장치매체”(예 : 플래시 메모리카드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와 “스마트카드”를 포함한다. 이들에 관하여는 제85류 주 제6호 참조.	개정 반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17p	- 제8523호와 제8525호 사이에 내용 추가 -	제8524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분류 품목 이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flat panel display module)을 분류하며(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의 물품은 액정디스플레이(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발광다이오드(LED)나 그 밖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곡선형인 것, 구부러지는 것, 접을 수 있는 것, 늘릴 수 있는 것이나 둘둘 말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일반적으로 '셀(cells)'이라고 부른다. LCD 셀의 경우에는, 액정(liquid crystal)이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된 두 개의 시트나 판(예 TFT 기판과 컬러 필터 기판) 사이에 놓이게 된다 ㉡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기(control units)가 추가된다. ㉢ 터치-감응 방식 스크린을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터치-감응 방식 스크린(touch-sensitive screen)이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에 부착되어 있거나 셀 안에 내장되어 있다. 이것들을 통해 이미지와 같은 정보를 출력[디스플레이(display)]하고 입력할 수 있다. (2) 제외 품목 ㉠ 영상신호 변환 부품을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보통 제8517호, 제8528호와 제8529호의 제품)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 결합된 시각 신호용 기기(표시반)(제8531호)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 결합된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일반적으로 제90류)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 결합된 악기(제92류)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 결합된 제95류의 모든 물품(예 비디오 게임 콘솔, 완구, 게임, 운동 장비, 스포츠용구 등)	호 설명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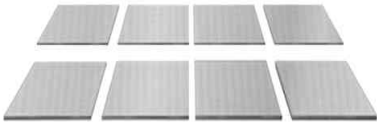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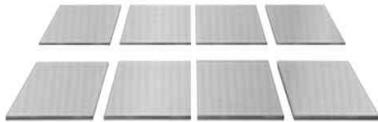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19p	(3) 텔레비전수신용 장치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 하 략 -	(3)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 하 략 -	오류 정정
321p	- 제8531호와 제8541호 사이에 내용 추가 -	제8539호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LED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 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하거나 조명기구 응용분야에 사용한다. LED(제8541호)는 전기제어를 위한 변환회로, IC, 커패시터 등 부품이 부착되어 제8539호의 LED 광원으로 분류하며, 주11호를 신설하여 두 가지 형태(LED 모듈과 LED 램프)로 구분하고 있다.  <2022년 HS에서 LED 제품의 품목분류>	호 설명 및 그림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21p	(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이들은 제85류 주 제9호가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그룹의 소자의 작용은 어떤 “반도체(semiconductor)” 재료의 전자적 특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재료의 주된 특징은 실내온도에서의 그 저항률이 금속도체의 저항률과 절연체의 저항률 사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다. 이 그룹에 해당되는 반도체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p형과 n형의 반도체 재료의 하나 이상의 “접합(junc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반도체 디바이스(예: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 이들은 제85류 주 제12호가목 1)에 정의되어 있다. 이 그룹의 소자의 작용은 어떤 “반도체(semiconductor)” 재료의 전자적 특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재료의 주된 특징은 실내온도에서의 그 저항률이 금속도체의 저항률과 절연체의 저항률 사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다. 이 그룹에 해당되는 반도체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p형과 n형의 반도체 재료의 하나 이상의 “접합(junc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반영
322p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③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 반도체 기판이나 반도체 재료가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 변환하는 핵심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는 독립적인 기술적 유닛(unit)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하지 않은 다이 제품(bare die product)이나 패키지(package)로 제시될 수 있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구성하는 부품(트랜스듀서의 구조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분리불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는 능동이나 수동 개별 구성부품을 포함한다)은 모든 의도와 목적상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야만 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일부 구성부품을 제거하고 대체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제조 조건에서는	반도체기반의 트랜스듀서 설명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③ 이와 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 여기서 말하는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하며, 사이리스터(Thyristors), 트라이액(2향의 삼극관 다이리스터), 다이액(diacs), 버랙터(varactors) (또는 가변용량 다이오드), 전계(電界)효과형 소자[예 : 그리디스터(gridistors)], 건 효과형 소자(gunn effect devices) 등이 포함된다.	비경제적이다. 트랜스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반도체 기반이 아닌 구성부품은 센서(sensor)·액추에이터(actuator)·공진기(resonator)·오실레이터(oscillator)로서의 트랜스듀서의 기능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트랜스듀서의 부분품으로 허용된다. ④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하며, 사이리스터(Thyristors), 트라이액(2향의 삼극관 다이리스터), 다이액(diacs), 버랙터(varactors) (또는 가변용량 다이오드), 전계(電界)효과형 소자[예 : 그리디스터(gridistors)], 건 효과형 소자(gunn effect devices) 등이 포함된다.	
323p	(3) 발광다이오드(LED)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s, 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특히 비화갈륨이나 인화갈륨을 기본성분으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 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한다. 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s)는 코히어런트(coherent)한 광선을 발하며, 예를 들면, 핵입자 검출용·고도측정장치용이나 원격측정장치용·광섬유를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사용한다.	(3) 발광다이오드(LED)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s, 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특히 비화갈륨이나 인화갈륨을 기본성분으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 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한다. 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는 가(可)간섭성(coherent)의 광선을 발산하며, 예를 들면, 핵입자 검출용·고도측정장치용이나 원격측정장치용·광섬유를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사용한다.	오류 정정
324p	제8542호 전자집적회로 이 호의 전자집적회로에 관하여는 아 류 주 제9호나목에 정의되어 있다. 위 제85류 주 제9호나목에서 규정한 사항을 부언하면,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나 수동부품과 능동소자나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유닛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만, 수동소자만	제8542호 전자집적회로 이 호의 전자집적회로에 관하여는 이 류 주 제12호나목에 정의되어 있다. 위 제85류 주 제12호나목에서 규정한 사항을 부언하면,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나 수동부품과 능동소자나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유닛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만, 수동소자만	오류 정정

[illegible]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③ 개별부품(discrete components)끼리 결합한 것이나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나 복합부품 집적회로 이외의 방식으로 초소형 전자회로를 결합한 것 ④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하이브리드 집적회로·복합구조칩 집적회로·복합부품 집적회로와 제85류의 주 제9호나목 (4)에 언급되지 않은 구성부품[예: 변압기(제8504호)나 자석(제8505호)]과의 결합품	③ 개별부품들(discrete components)의 결합물,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나 복합부품 집적회로 이외의 초소형 전자회로의 결합물 ④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하이브리드 집적회로·복합구조칩 집적회로·복합부품 집적회로와 이 류의 주 제12호나목 4)에 언급되지 않은 구성부품[예: 변압기(제8504호)나 자석(제8505호)]과의 결합물	
328p	- 제8544호 다음에 내용 추가 -	제8549호 절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이 호의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e-웨이스트(e-waste)]은 광범위한 물품을 분류하는데, 플러그(plug)를 가지거나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그 수명 주기(life-cycle)의 끝 지점에 가서는 e-웨이스트가 될 것이다. (2) 이 호의 목적상 e-웨이스트는 회수·재활용이나 처분에 적당한 물품만을 포함하며, 그들의 원래의 용도나 후속의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리·정비·보수·재사용·리퍼포싱(repurposing) 하기에 적당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히 중고품이라는 것만으로 e-웨이스트로 변경되는데 충분하지 않다. e-웨이스트는 물리적으로 온전하거나(그러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 폐기된 상태(예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형태로 소진되거나 파괴된 것)일 수도 있다. (3) e-웨이스트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그러나, 여기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① 웨이스트, 스크랩, 또는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② 가전제품(consumer electronics) ③ 사무·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장치 ④ 가정용품(household appliances) ⑤ 전동 공구(power tools) ⑥ 전기·전자 부분품(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한다)	호설명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33p	주 제1호 제외물품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된다. - 중 략 -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만,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의 임플란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한다.	주 제1호 제외물품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된다. - 중 략 -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만,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의 임플란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한다.	오류 정정
337p	제9013호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액정디바이스(LCD, Liquid crystal devices)는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 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조각이나 특정모양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제품을 구성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레이저기기(lasers)(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에서 1밀리미터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자외선·가시광선과 적외선의 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 하 략 -	제9013호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삭 제 - 레이저기기(lasers)(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에서 1밀리미터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자외선·가시광선과 적외선의 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 하 략 -	내용 일부 삭제
338p	＼LCD CELL과 레이저 포인트＼   LCD CELL 레이저 포인트	＼LCD CELL과 레이저 포인트   LCD CELL (제8524호) 레이저 포인트 (제9013호)	개정 반영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40p	(3) 주요 제외물품 이 호에서 제외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소독된 캣거트 및 이와 유사한 봉합재·멸균 라미나리아와 멸균 라미나리아텐트(제3006호) ② 제3822호의 진단용 또는 실험용 시약 ③ 제4014호의 고무제의 위생용품 또는 의료용품 ④ 제7017호의 아화학용 또는 위생용의 유리제품 ⑤ 비금속제의 실내위생용품(특히 제7324호 제7418호 및 제7615호) ⑥ 안경, 고글 및 이와 유사한 것.(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인지에 상관없다)(제9004호) ⑦ 사진기(제9006호)(이 호의 기기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3) 주요 제외물품 이 호에서 제외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소독된 캣거트 및 이와 유사한 봉합재·멸균 라미나리아와 멸균 라미나리아텐트(제3006호) ② 제3822호의 진단용 또는 실험용 시약 ③ 제4014호의 고무제의 위생용품 또는 의료용품 ④ 제7017호의 실험실용·화학용·위생용의 유리제품 ⑤ 비금속제의 실내위생용품(특히 제7324호 제7418호 및 제7615호) ⑥ 안경, 고글 및 이와 유사한 것.(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인지에 상관없다)(제9004호) ⑦ 사진기(제9006호)(이 호의 기기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오류 정정
341p	⑧ 제9011호나 제9012호의 현미경 등 ⑨ 제9019호의 기계용법의 기기·산소흡입기·오존흡입기·인공흡입기·에어줄치료기·마사지용 등의 기기 ⑩ 정형외과용기기·인조의 인체부분 및 골절치료구(동물용의 것을 포함한다)(제9027호) ⑪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의료용인지에 상관없다) ⑫ 체온계(제9025호) 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일반적으로 제9027호) ⑭ 의료용 가구(수익용의 것 포함)(수술대·검사대·병원용 침대), 치과용 의자(이 호의 기기가 결합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등(제9402호)	⑧ 제9011호나 제9012호의 현미경 등 ⑨ 제9019호의 기계용법의 기기·산소흡입기·오존흡입기·인공흡입기·에어줄치료기·마사지용 등의 기기 ⑩ 정형외과용기기·인공 인체 부분과 골절 치료구(동물용의 것을 포함한다)(제9021호) ⑪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의료용인지에 상관없다) ⑫ 체온계(제9025호) 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일반적으로 제9027호) ⑭ 내과용 가구나 외과용 가구(수익용 가구를 포함한다)(수술대·검사대·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이 호의 기기가 결합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등(제9402호)	오류정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43p	(2)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골절 치료구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 붙이기 또는 보호하기 위해), 또는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기타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도 사용된다. - 중 략 - (4) 보청기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증폭기의 유무를 불문한다)·리시버 및 전지가 들어있는 회로로 구성된 전기기기이다. 리시버는 귀의 속이나 또는 귀의 배부에 끼도록 되어 있거나, 귀에 손으로 갖다 대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이 그룹에는 난청을 극복하기 위한 기기에 한한다. 따라서 말을 쉽게 듣기 위하여 회의실에서 사용되거나 교환수가 사용하는 헤드폰·증폭기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2) 골절 치료용 부목(splint)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골절 치료구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 붙이기 또는 보호하기 위해), 또는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기타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도 사용된다. - 중 략 - (4) 보청기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한 개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증폭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리시버·전지가 들어있는 회로로 구성된 전기기기이다. 리시버는 귀의 속이나 귀의 배부에 끼도록 되어 있거나, 귀에 손으로 갖다 대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이 그룹에는 난청을 극복하기 위한 기기에 한한다. 따라서 말을 쉽게 듣기 위하여 회의실에서 사용하거나 교환수가 사용하는 헤드폰·증폭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오류 정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56p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8801</td><td>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td></tr><tr><td>8802</td><td>그 밖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과 우주선 운반로켓</td></tr><tr><td>8803</td><td>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td></tr><tr><td>8804</td><td>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s),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td></tr><tr><td>8805</td><td>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8801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과 우주선 운반로켓	8803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s),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8801</td><td>기구·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td></tr><tr><td>8802</td><td>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td></tr><tr><td>8804</td><td>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td></tr><tr><td>8805</td><td>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td></tr><tr><td>8806</td><td>무인기</td></tr><tr><td>8807</td><td>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td></tr></table>	품목번호	품 명	8801	기구·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6	무인기	8807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개정 반영
품목번호	품 명																												
8801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과 우주선 운반로켓																												
8803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s),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품목번호	품 명																												
8801	기구·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6	무인기																												
8807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357p	<table><tr><th>주 제2호</th><th>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되는 물품</th></tr><tr><td colspan="2">“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제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중 략 -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램프나 조명기구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td></tr></table>	주 제2호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되는 물품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제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중 략 -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램프나 조명기구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table><tr><th>주 제2호</th><th>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되는 물품</th></tr><tr><td colspan="2">“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제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중 략 -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그 부분품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td></tr></table>	주 제2호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되는 물품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제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중 략 -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그 부분품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개정 반영																		
주 제2호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되는 물품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제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중 략 -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램프나 조명기구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주 제2호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되는 물품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제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중 략 -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그 부분품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59p 맨 아래	- \제17부 수송기기의 종류\ 표 다음 내용 추가 -	 무인기(Unmanned aircraft)의 분류 (1) 정 의 이 류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제외한다(제9503호). (2) 제8806호의 분류 품목 제88류의 주 제1호에 따라, 이 호에는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무인기를 분류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무인기는 비행 중에 언제든지 조종사가 다른 장소(예 지상·배·또다른 항공기나 우주선)에서 원격으로 조종비행이 가능하거나 조종사의 관여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무인기는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지만, 보통은 모터에 의해 추진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펠러(propeller)나 회전날개(rotor), 고정날개, 그리고 원격 조종사가 지휘와 제어를 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또한 안정적인 회전과 이륙 지점에서의 비행 복귀를 위한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GNSS) 수신기(예 GPS, GLONASS나 BEIDOU)와 장애물 회피·목적물 인식·추적기능용 시스템도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무인기는 화물(payload)을 운반하거나, 영구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또는 여러 실용기능(예 화물이나 승객의 수송, 항공 촬영, 농업용·과학용 작업, 조난자 구조, 소방용, 감시용,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또한 전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목적이나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나 모델로서,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예를 들면 저(低) 중량, 고도제한, 비행 가능거리나 시간, 최대 속도, 자율비행 기능이 없는 점, 짐/화물 수송 능력이 없는 점, 또는 지능적 전자 장치(예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야간비행 필요조건이나 야간 투시경)를 갖추지 않은 점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다(제9503호)	무인기 설명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62p 맨 아래	- \제87류에 분류되는 물품과 제87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표 다음 내용 추가 -	소호주 제1호 자동차용 창문의 분류 소호 제8708.22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를 결합한 것에 한정한다)	87류 신설 소호주 추가
364p	제8702호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이 호에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모든 자동차를 분류한다. 특히, 제87류 주 제3호에 따라 원동기(엔진)와 운전실을 갖춘 자동차 새시도 이 호로 분류되며 이 규정은 제8703호와 제8704호에도 적용된다.	제8702호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이 호에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모든 자동차를 분류한다. 특히, 제87류 주 제3호에 따라 원동기(엔진)와 운전실을 갖춘 자동차 새시도 이 호로 분류되며 이 규정은 제8703호와 제8704호에도 적용된다. 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동기를 결합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 : Hybrid Electric Vehicle)"라고 하며, "전기 자동차"는 전기 모터나 축전지 팩에 의하여 동력을 얻는 모터에 의하여 구동된다.	내용 추가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70p	- \제8708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예시\ 표 다음 내용 추가 -	<table><tr><th>품명</th><th>형태 및 구성</th><th>HSC 분류결과</th></tr><tr><td>Coated Heating Auto-motive Window</td><td> 자동차 전방 윈드쉴드용 접합유리로 유리의 실내쪽 방향에 두께 50~250mm의 메탈 필름이 적층되었고, 메탈 필름은 커넥터로 전원에 연결되어 저항가열체 역할을 함(유리표면의 서리와 눈 제거) </td><td>제8708.29호</td></tr><tr><td>Auto-motive Glass with HUD(head Up Display)</td><td> 자동차 전방 윈드쉴드용 접합유리로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반사 필름 층이 들어있어 자동차의 HUD(head Up Display)에서 출력된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 역할 수행(전기적 기능은 없음) </td><td>제7007.2호</td></tr></table>	품명	형태 및 구성	HSC 분류결과	Coated Heating Auto-motive Window	 자동차 전방 윈드쉴드용 접합유리로 유리의 실내쪽 방향에 두께 50~250mm의 메탈 필름이 적층되었고, 메탈 필름은 커넥터로 전원에 연결되어 저항가열체 역할을 함(유리표면의 서리와 눈 제거)	제8708.29호	Auto-motive Glass with HUD(head Up Display)	 자동차 전방 윈드쉴드용 접합유리로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반사 필름 층이 들어있어 자동차의 HUD(head Up Display)에서 출력된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 역할 수행(전기적 기능은 없음)	제7007.2호	그림 추가
품명	형태 및 구성	HSC 분류결과										
Coated Heating Auto-motive Window	 자동차 전방 윈드쉴드용 접합유리로 유리의 실내쪽 방향에 두께 50~250mm의 메탈 필름이 적층되었고, 메탈 필름은 커넥터로 전원에 연결되어 저항가열체 역할을 함(유리표면의 서리와 눈 제거)	제8708.29호										
Auto-motive Glass with HUD(head Up Display)	 자동차 전방 윈드쉴드용 접합유리로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반사 필름 층이 들어있어 자동차의 HUD(head Up Display)에서 출력된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 역할 수행(전기적 기능은 없음)	제7007.2호										
371p	1. 새시(Chassis)(제8706호) 및 새시 부분품(제8708호) 새시는 자동차에서 차체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프레임에 운행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running gear)가 조립된 것이다. 새시는 제8706호에 분류되며, 이 호의 새시에는 보닛(후드)·윈드스크린(윈드쉴드)·진흙받이·발판 및 계기반이 부착될 수 있다. 또한, 타이어·카뷰레터 또는 축전지(배터리) 또는 커타 전기장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 하 락 -	1. 엔진을 갖춘 새시(Chassis)(제8706호) 및 새시 부분품(제8708호) 새시는 자동차에서 차체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프레임에 운행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running gear)가 조립된 것이다. 엔진을 갖춘 새시는 제8706호에 분류되며, 이 호의 새시에는 보닛(후드)·윈드스크린(윈드쉴드)·진흙받이·발판 및 계기반이 부착될 수 있다. 또한, 타이어·카뷰레터 또는 축전지(배터리)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 하 락 -	오류 정정									

페이지	2022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판 내용											비 고																					
389p	2. 제84류											2. 제84류											개정 반영																					
	<table><tr><td> Y X </td><td>0</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r><tr><td>80</td><td>주형틀· 주 형</td><td>관·탭· 벨 브</td><td>베어링</td><td>전동축· 크랭크· 변속기</td><td>개스킷· 연결구</td><td>공관</td><td>반도체· 평판디스 플레이 제조기기</td><td>기계류의 부분품</td><td>-</td><td>-</td></tr></table>	Y X	0	1	2	3	4	5	6	7	8	9	80	주형틀· 주 형	관·탭· 벨 브	베어링	전동축· 크랭크· 변속기	개스킷· 연결구	공관	반도체· 평판디스 플레이 제조기기	기계류의 부분품	-		-																				
Y X	0	1	2	3	4	5	6	7	8	9																																		
80	주형틀· 주 형	관·탭· 벨 브	베어링	전동축· 크랭크· 변속기	개스킷· 연결구	공관	반도체· 평판디스 플레이 제조기기	기계류의 부분품	-	-																																		
390p	3. 제85류											3. 제85류											개정 반영																					
	<table><tr><td> Y X </td><td>0</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r><tr><td>20</td><td>공관</td><td>비디오</td><td>제8519호 내지 제8521호 의 기기의 부품과 부속품</td><td>디스크· 테이프 스마트 카 드</td><td>공관</td><td>방송기기 (라디오· TV)· 비디오 및 디지털 카메라</td><td>레이다 · 무선기기</td><td>라디오· 포켓 카세트</td><td>T V · 모니터</td><td>8525- 8528의 부분품</td></tr><tr><td>40</td><td>열전자관· 광전관· 음극 선관· 전자총</td><td>반도체</td><td>전자직접 회로</td><td>그 밖의 전기기기</td><td>전선· 광섬유 케이블</td><td>탄소전극 · 탄소봉</td><td>애 자</td><td>절연용 물 품</td><td>전자의 스크랩 전자거가 부분품</td><td></td></tr></table>	Y X	0	1	2	3	4	5	6	7	8	9	20	공관	비디오	제8519호 내지 제8521호 의 기기의 부품과 부속품	디스크· 테이프 스마트 카 드	공관	방송기기 (라디오· TV)· 비디오 및 디지털 카메라	레이다 · 무선기기	라디오· 포켓 카세트	T V · 모니터		8525- 8528의 부분품	40	열전자관· 광전관· 음극 선관· 전자총	반도체	전자직접 회로	그 밖의 전기기기	전선· 광섬유 케이블	탄소전극 · 탄소봉	애 자	절연용 물 품	전자의 스크랩 전자거가 부분품										
Y X	0	1	2	3	4	5	6	7	8	9																																		
20	공관	비디오	제8519호 내지 제8521호 의 기기의 부품과 부속품	디스크· 테이프 스마트 카 드	공관	방송기기 (라디오· TV)· 비디오 및 디지털 카메라	레이다 · 무선기기	라디오· 포켓 카세트	T V · 모니터	8525- 8528의 부분품																																		
40	열전자관· 광전관· 음극 선관· 전자총	반도체	전자직접 회로	그 밖의 전기기기	전선· 광섬유 케이블	탄소전극 · 탄소봉	애 자	절연용 물 품	전자의 스크랩 전자거가 부분품																																			
391p	4. 제90류											4. 제90류											개정 반영																					
	<table><tr><td> Y X </td><td>0</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r><tr><td>10</td><td>사진현상 실용의 기 기</td><td>광 학 현미경</td><td>그 밖의 현미경</td><td>액정 디바이스 와 그 밖의 광학거가</td><td>컴퍼스 · 항행용 기 기</td><td>토지측량 기 기</td><td>정밀저울</td><td>제도·설계 · 계산용구 및 수지 식의 길이측정 용 구</td><td>의료용 기 기</td><td>치료용 기 기</td></tr></table>	Y X	0	1	2	3	4	5	6	7	8	9	10	사진현상 실용의 기 기	광 학 현미경	그 밖의 현미경	액정 디바이스 와 그 밖의 광학거가	컴퍼스 · 항행용 기 기	토지측량 기 기	정밀저울	제도·설계 · 계산용구 및 수지 식의 길이측정 용 구	의료용 기 기		치료용 기 기																				
Y X	0	1	2	3	4	5	6	7	8	9																																		
10	사진현상 실용의 기 기	광 학 현미경	그 밖의 현미경	액정 디바이스 와 그 밖의 광학거가	컴퍼스 · 항행용 기 기	토지측량 기 기	정밀저울	제도·설계 · 계산용구 및 수지 식의 길이측정 용 구	의료용 기 기	치료용 기 기																																		

2. 주요 추가내용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3

각 류별 품목분류 체계 해설

제33류 |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이 류에는 특정식물의 잎이나 꽃에서 얻어진 정유를 비롯하여 천연 또는 합성물질의 방향성 물질혼합물과 각종의 향수, 화장품류, 인체에 사용되는 위생용품, 화장품류, 실내용 조제방취제 (보조적인 성질 이상으로 소독제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제3307호에 분류), 동물용 화장품류 등이 분류된다.

1. 제33류 호의 용어

품목번호	품 명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애플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3	향수와 화장수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5	두발용 제품류
3306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 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33류 부터 제34류 까지 추가

147p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2. 중요 주 규정 주 제3호 화장품의 소매포장 규정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 주 제4호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의 정의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품을 말한다. 정유, 레지노이드, Petroleum Jelly 1. 정 유(Essential oils) 정유는 향료, 식품 및 기타의 공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며 그 원천은 식물이다. 성분은 알코올, 알데히드, 케톤, 에스테르, 에테르 등 여러 가지 복합성분이며 대부분 휘발성이다. 종류는 오렌지유, 자스민유, 박하유 등 추출된 식물에 따라 다양하다. 2. 레지노이드(Resinoids) 레지노이드는 향수, 화장품, 비누 또는 계면활성제 공업에서 주로 고착제로 사용되며 비휘발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건조된 천연식물성 수지질 재료(검, 올레오레진 등)나 특정식물의 건조된 부분 및 건조된 천연동물성 수지질재료(사향 등)에서 추출하여 얻어진다. 3. Petroleum Jelly(석유젤리, Vaseline) 피부보호제, 의약품 연고 등의 기재로 사용되며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됨. ① 단순히 순수한 것은 2712호에 분류 ② 피부보호제로 사용하기 위해 향을 배합한 것은 3304호에 분류 ③ 연고와 같이 의약품질을 첨가하여 의약품으로 조제한 것은 3003호, 3004호에 분류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이 류에는 주로 지방(脂)·기름(油)이나 왁스를 공업적인 처리를 하여 얻어진 물품(예: 비누·특정 조제 윤활제·조제 왁스·특정광택제·세척제·양초)이 포함되며, 특정의 인조제품(예: 계면활성제·계면활성조제품과 인조 왁스)도 포함한다. 이 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과 혼합하거나 조제하지 않은 천연산물은 제외한다.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1. 제34류 호의 용어 <table><tr><th>품목번호</th><th>품 명</th></tr><tr><td>3401</td><td>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td></tr><tr><td>3402</td><td>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td></tr><tr><td>3403</td><td>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td></tr><tr><td>3404</td><td>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td></tr><tr><td>3405</td><td>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td></tr><tr><td>3406</td><td>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td></tr><tr><td>3407</td><td>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td></tr></table> 2. 중요 주 규정 주 제2호비누의 정의 제3401호에서 "비누"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그 밖의 물품에는 소독제·연마가루·충전제·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가루를 함유한 물품은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여 제3401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주 제3호유기계면활성제의 정의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품목번호	품 명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6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407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품목번호	품 명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6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407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페이지	추가 내용	비 고
	주 제5호 인조 왁스의 정의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 나.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다.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이나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가. 제1516호·제3402호·제3823호의 물품(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제1521호의 혼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왁스(정제한 것인지 또는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 광물성 왁스나 제2712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왁스를 액체 매질(媒質)에 혼합·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나 제3809호 등) 왁스의 특성 왁스의 특성이란 왁스로서 갖추어야 할 외형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말하는데 기존의 왁스에 왁스 이외의 다른 물질이 혼합된 조제왁스의 경우에 이 특성이 중요시된다. 왁스의 특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왁스이다. ① 40℃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됨이 없이 용해되어야 한다. ②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낮다. ③ 밀도와 용해성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④ 부드럽게 문지르면 광택이 난다. ⑤ 20℃에서 소프트왁스는 부드럽고 반죽이 가능하지만, 하드왁스는 부스러지기 쉽다.	